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00. 00.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인건비의 범위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과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경비로 규정(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다.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으로 함(안 제4조제2항)

라.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인력의 인건비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안 제4조제3항)

마.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지역자원시설세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최근 3년('18~'20년) 평균값을 적용하여 시·도별로 각각 정함(안 제4조제4항, 별표 1)

지역자원시설세 전입비율	=	$\frac{\text{최근 3년간 지역자원시설세 인건비 사용 평균액}}{\text{최근 3년간 소방분야 지역자원시설세 평균액}} \times 100(\%)$
1) 2018년, 2019년은 최종예산액, 2020년도는 본예산 기준		

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규모 및 기준은 최근 3년('18~'20년) 평균을 적용하여 시·도별로 각각 정함(안 제5조제1항, 별표 2)

일반회계 전입비율	=	$\frac{\text{최근 3년간 일반회계 소방정책사업비 전입액 평균}}{\text{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 최종예산액 평균(소방본부 소관 제외)}} \times 100(\%)$
1) 2018년, 2019년은 최종예산액, 2020년도는 본예산		

사.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인건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안 제5조제2항)

아. 법 제7조에 따른 시·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시·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정책사업비의 해당 금액을 전입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4조제4항과 제5조제1항의 전입규모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정여건 및 투자소요 등을 감안하여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안 제6조제3항)

차. 소방청장은 특별회계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각 계정별로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안 제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준용)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인건비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제4조(인건비계정 세입의 범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 인건비계정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제2항과 제4항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금액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건비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규모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역자원시설세 금액 중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할 때에는 시·도의 예산계획, 편성기준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제4조와 제5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전입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도 지사는 제4조제4항과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입규모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시·도별 전입규모 기준비율의 38% 이내 가감
2. 제5조제1항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한 시·도별 전입규모 기준비율의 32% 이내 가감

제7조(운용사항의 분석·평가 등) 소방청장은 특별회계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거나 시·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각 계정별로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시 부터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인건비계정에 전입해야할 지역자원시설세의 전입기준(제4조제4항 관련)

1. 전입 기준 : 당해연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예산액
2. 전입 규모

시 도	전입규모(비율)	비 고
서울특별시	27.5895% 이하	
부산광역시	33.3001% 이하	
대구광역시	29.6576% 이하	
인천광역시	27.0995% 이하	
광주광역시	12.6068% 이하	
대전광역시	9.8736% 이하	
울산광역시	22.7004%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24.7316% 이하	
경기도	24.2903% 이하	
강원도	0.0000% 이하	
충청북도	0.9105% 이하	
충청남도	0.0000% 이하	
전라북도	0.0000% 이하	
전라남도	0.0000% 이하	
경상북도	0.0000% 이하	
경상남도	0.0000%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0.0000% 이하	

- 가. 2020. 1. 1. 기준 맞춤형복지·국외연수 등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던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하고 전입한다.
- 나. 특정업무경비가 인원증원 또는 단가 인상 등으로 증액이 필요할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하고 전입한다.

[별표 2]

소방정책사업비계정에 전입해야할 시·도 일반회계 전입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전입 기준 : 당해연도 시·도 일반회계 총액
2. 전입 규모

시 도	전입규모(비율)	비 고
서울특별시	0.0000% 이상	
부산광역시	0.0324% 이상	
대구광역시	0.0007% 이상	
인천광역시	0.0141% 이상	
광주광역시	0.0546% 이상	
대전광역시	0.0030% 이상	
울산광역시	0.0000%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0.1015% 이상	
경기도	0.0000% 이상	
강원도	0.5838% 이상	
충청북도	0.1590% 이상	
충청남도	0.1458% 이상	
전라북도	0.2834% 이상	
전라남도	0.2290% 이상	
경상북도	0.4027% 이상	
경상남도	0.1681%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0.2404% 이상	

- 가. 2020. 1. 1. 기준 맞춤형복지·국외연수 등 일반회계에 통합관리 운영하던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증액하여 전입한다.
- 나. 특정업무경비가 인원증원 또는 단가 인상 등으로 증액이 필요할 경우 그 금액을 증액하여 전입한다.
- 다. 별표 1에서 “가” 및 “나”의 예산증액 요인을 반영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반영하지 않는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225